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1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특허 심사업무 16명과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12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 중 1명(9급 1명)은 감축하며,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특허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제8조제7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제19조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각각 “7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서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별표 7 제2호 및 별표 8 제2호와 같다”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530”을 삭제하고, 일반직계 “1,528”을 “1,560”으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

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01”을 “332”로 하고,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5”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2.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2.0”을 삭제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530”을 삭제하고, 일반직계 “1,528”을 “1,560”으로 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01”을 “332”로 하고,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5”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2.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2.0”을 삭제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22”를 삭제하고, 일반직계 “22”를 “2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3”으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8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23”을 삭제하고, 일반직계 “23”을 “24”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4”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9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별표 8의 9급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3조 관련)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융복합기술심사국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2)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1명 (3급 또는 4급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3) 융복합기술심사국 사물인터넷심사과	1명 (4급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특허 심사업무	36명 (4급 또는 5급 10명, 6급 2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8명 (6급 8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특허 심사업무	20명 (6급 2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부정경쟁행위, 상표권·특허권 · 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	5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특허 심사업무	14명 (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6)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9명 (6급 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u>12. 특허공제사업의 관리 · 운영</u> 13. (생 략)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u>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u> <u>재산권 관리역량 강화의 지원</u> 7. · 8. (생 략) 9. ~ 12. 삭 제 <u><신 설></u> ⑤ · ⑥ (생 략)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13.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7. · 8. (현행과 같음) <u>13. 특허공제사업의 관리 · 운영</u>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u> <u>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사</u> <u>업화 촉진 지원</u>
제19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제19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
와 같다.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
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
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
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
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9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7퍼센트-----

-----.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
센트-----

-----.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
다.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별표 7 제2호 및 별표 8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
-----.

----- 7퍼
센트-----

-----.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2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u>별표 6의 9급 1명</u> <u>및 별표 8의 9급 1명은 각각 20</u> <u>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2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삭 제></u>
---	---

신 · 구정원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			
<u>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u>	<u>1,530</u>	<u><삭 제></u>	-1,530
·	·	·	
·	·	·	
일반직 계	<u>1,528</u>	<u>1,560</u>	+32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301</u>	<u>332</u>	+3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 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5</u>	+1
·	·	·	
·	·	·	
<u>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계</u>	<u>32.0</u>	<u><삭 제></u>	-32.0
<u>일반직 계</u>	<u>32.0</u>	<u><삭 제></u>	-32.0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u> <u>·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u> <u>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u> <u>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u> <u>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u> <u>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u> <u>방송통신주사</u>	<u>31.0</u>	<u><삭 제></u>	-31.0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u> <u>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u> <u>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1.0</u>	<u><삭 제></u>	-1.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u> .			
<u>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u>	<u>1,530</u>	<u><삭 제></u>	-1,530
·	·	·	
·	·	·	
일반직 계	<u>1,528</u>	<u>1,560</u>	+32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 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 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 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 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301</u>	<u>332</u>	+3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 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5</u>	+1
·	·	·	
·	·	·	
<u>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계</u>	<u>32.0</u>	<u><삭 제></u>	-32.0
<u>일반직 계</u>	<u>32.0</u>	<u><삭 제></u>	-32.0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u> <u>·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u> <u>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u> <u>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u> <u>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u> <u>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u> <u>방송통신주사</u>	<u>31.0</u>	<u><삭 제></u>	-31.0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u> <u>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u> <u>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1.0</u>	<u><삭 제></u>	-1.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u>			
<u>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u>	<u>22</u>	<u><삭 제></u>	-22
일반직 계	<u>22</u>	<u>23</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 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u>	<u>3</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u>	<u><삭 제></u>	-1.0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0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u> <u>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u> <u>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1.0</u>	<u><삭 제></u>	-1.0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u>			
<u>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u>	<u>23</u>	<u><삭 제></u>	-23
일반직 계	<u>23</u>	<u>24</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u>	<u>4</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u>	<u><삭 제></u>	-1.0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0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u> <u>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u> <u>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1.0</u>	<u><삭 제></u>	-1.0
---	------------	--------------------	------